

04

제 2 토 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노병갑(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노병갑(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회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아래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유사한 지원 정책으로 몇 개의 기업을 만들었는가? 등의 성과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정책추진 및 지원체계의 정비, 구축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염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척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4월 1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현재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활현장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시범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시범사업, 고용복지센터 시범사업 등 정리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가득이나 혼란스러운 시점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또 다른 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려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 그간의 과정을 보면,

- 1월 22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 2월 19일~26일 4개 분과 각 1회씩 회의진행
- 2월 26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개요, 3월 5일 초안, 3월 26일 검토
- 4월 10일 공청회, 4월 국회 입법발의

-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함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나 준비가 없기에 모든 비난과 비판을 떠안고 선도적으로 (안)을 던짐으로서 논의의 수준과 폭을 넓혀보겠다는 헌신적 희생전신으로 보아야 할지,
- 아니면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이해와 욕구를 모두 알고 있기에 이에 맞는 기본법을 만들어 줄테니 모두 따라오라고 하는 오만함인지,
- 그도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의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 제2조 3항 사회적경제조직에 조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 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들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를 위축되고 협소하게 만들었던 전철을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도 밟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연계복지사업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을 통하여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사업에는
 - 취업지원사업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리본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마이크로크레딧사업으로서 희망크롬뱅크, 생업자금융자 알선
 -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자활근로사업으로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성과로 설립되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는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위의 사업들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확대, 사회서비스지원, 자활기업 설립,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참여의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며,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수행을 사회복지 인프라의 성격を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하고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체계를 해체하고 사회복지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준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2016년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 인프라를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하느냐, 통폐합하느냐가 먼저 거론된다는 것은 자활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개편이후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내용과 별개로 자활기업은 노동통합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4. 통합이 만능해결방안 인가하는 것입니다.

- 중복지원과 비효율의 문제로 인한 칸막이제거가 하나의 부처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이 최우선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에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장에서 답답해하는 것은 각 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처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원⇒권역별 통합지원센터로 지원전달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 자칫 관료적 통제에 따른 자율성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너무 중앙 중심적이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 제9조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
 -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의 간섭,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평가를 통한 중앙 통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6.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입니다.

○ 2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③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끝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과정과 절차, 내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의 입장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간진영에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 준비되어 졌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입법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기본법 제정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제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본법 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다 많은 사항들이 세밀하게 담길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법을 준비했던 분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간다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을 망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보다 긴 호흡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 제정이 추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